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 직군·직렬 별도 신설〉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83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20.
3. 회부연월일 : 2026. 3.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21년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권 독립 외에 지방의회 직렬이 별도로 신설되지 못함에 따라 여전히 집행부 소속 공무원과의 교류 또는 파견 형태로 인사관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의미의 인사권 독립과는 괴리가 있는 상황이고, 집행기관 파견 공무원의 경우 여전히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군 및 직렬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II.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을, 지방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을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④ (생략)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u> ④ (현행과 같음)

「국가공무원법」¹⁾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을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직무의 성격에 따라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6. (생략)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9.~10. (생략)

「지방공무원법」²⁾도 국가공무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을 1급부터 9급까지로 구분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³⁾에서 각 계급의 직군·직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 때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하고, 직렬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함.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은 행정, 과학기술, 관리운영 등으로, 직렬은 직군별로 8개에서 22개의 직렬로 구별됨.

《지방공무원(일반직공무원) 직군·직렬 현황》

직군	직렬
행정	행정, 교육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사서, 속기, 방호(8)
과학기술	공업, 농업, 녹지, 수의, 해양수산,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간호조무, 보건진료, 환경, 항공, 시설, 방재안전, 방송통신, 위생, 조리, 시설관리, 운전(22)
관리운영	토목운영, 건축운영,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열관리운영, 화공운영, 가스운영, 기후환경운영,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농림운영, 사육운영, 보건운영, 사무운영(16)

자료: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2) 「지방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3.~6. (생략)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9.~10. (생략)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

한편, 종전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권을 행사하였으나,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고 의장 소속의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⁴⁾

그러나 직군·직렬 체계는 여전히 집행기관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고, 인력 운용 또한 일부 인력을 집행부 소속 공무원과의 인사교류나 파견 등을 통해 충원하고 있어, 의회 업무에 특화된 인력을 별도의 직군·직렬로 채용하여 의회 전문가로 육성하고 장기적인 경력경로를 형성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직군 및 직렬을 집행기관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의정

4)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도회의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생략)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 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⑪ (생략)

지원 인력의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던 문제를 개선하고, 의회업무 수행의 연속성을 담보하며, 이를 통해 조례 입법·예결산 심사 등 고유 의정 업무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육성·관리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의회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인력 규모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음에 따라 인력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방의회별 평균 인원 수를 살펴보면, 광역의회는 173명(2,771명/16개 시·도), 기초의회는 27명(6,097명/227개 시·군·구)에 불과함.

「지방공무원법」⁵⁾은 ‘직렬별 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직무의 성격이 다른 직렬이나 직군으로 옮기는 전직(轉職)은 시험 등을 통하도록 하거나 특정 경우 전직을 제한⁶⁾하는 등 예외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5) 「지방공무원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10. (생략)

제29조의2(전직) 공무원이 전직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가.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고려하면, 지방의회 직군·직렬을 별도로 정할 경우, 소수(小數)직렬화에 따라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의 폭이 제한될 수 있음.

《지방의회 직렬별 공무원 현원》

(단위: 명)

구분	계	가. 행정직군								나. 관리운영직군					
		행정	세무	전산	사회 복지	사서	숙기	방호	4급 이상	전기 운영	기계 운영	열관리 운영	통신 운영	전화 상담 운영	사무 운영
광역	2,771	1823	1	34	14	13	162	15	227	3	8	-	3	-	41
기초	6,097	4204	44	34	75	2	407	10	130	12	6	1	9	1	56
다. 과학기술직군															라. 기타
공업	농업	녹지	해양 수산	보건	환경	시설	방재 안전	방송 통신	시설 관리	운전	위생	의료 기술	4급 이상		
45	8	0	2	2	3	57	-	26	-	57	1	-	11	215	
48	37	6	4	3	11	131	1	52	6	298	3	1	9	496	

※ (기준) 2026. 7. 23. 현재 / (기타) 직렬, 계급을 구분하지 않는 공무원(전문경력관, 임기제, 별정직) / 파견자 제외 / 광역(16개 시도의회), 기초(227개 시군구의회)

자료: 행정안전부

나. 전직 예정직 관련 교육훈련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다. 전직 예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라.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직제 또는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해당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부시장, 부군수,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부구청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4. 그 기관의 같은 직렬에는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다른 직렬(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같은 직군의 직렬에 한정한다)의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5.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신규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6. 삭제

② 제1항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직급에 전직시킬 때에는 그 특수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전직시켜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년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직렬이 아닌 직렬로 전직될 수 없으며, 법 제2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행정직렬이 아닌 공무원과 같은 항 제2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5년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4급 이하 행정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직 제한기간에도 전직될 수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의회 사무처·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회 결과, 의견을 제출한 207개 지방의회 중 140개(67.6%)는 별도의 의회 직군·직렬 신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개정안과 같이 의회 직군과 직렬을 모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지방의회는 34개(16.4%)⁷⁾에 그쳤음.

《지방의회 직군·직렬 신설 관련 지방의회 의견조회 결과》

구 분	불필요	필요		
		직군 신설	직렬 신설	직군·직렬 신설
207 (100%)	140 (67.6%)	18 (8.7%)	15 (7.3%)	34 (16.4%)

※ 36개 지방의회는 의견 미제시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2021. 1. 12.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⁸⁾의 시행으로,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배치할 수 있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바, 의정지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은 지방의회 업무의 전문성과 인사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와 함께, 실제 운영에 있어서의 지방의회의 소규모 인력구조에

7) 이외에 직군만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지방의회는 18개(8.7%), 기존 행정직군 아래 의회 직렬만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지방의회는 15개(7.3%)였음.

8)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른 승진·전보 등 제약과 이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의 낮은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소수의 공무원 인력을 운영하고 있어 지방의회 직군·직렬을 신설할 경우 소수직렬화로 승진·전보 등 인력 운영 제한, 집행부 및 다른 기관과의 인사교류 단절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2